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통학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통학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가. 건　명 :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통학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나. 목　적 :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아카데미'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교통 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운행대수 : 3대(21인승 이상)

마. 탑승인원 : 각 코스(1호 ~ 3호) 별로 인원은 상이하며 전체 인원 63명(지도자 포함)을 수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코스 별 인원은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 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코스별 탑승 **인원 초과 시 차량 대수 또는 횟수를 증편**하여 운행한다.**(예시 : 1호 노선 16명, 2호 노선-26명, 3호 노선 21명)**

바. 차량종류 : 21인승 이상 버스 3대(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해 사전 신고 된 어린이 통학버스) 통학버스, 신고 필증 비치(도로교통법 제 52조 제2항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제 55조 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사. 차량연식 : **2018. 1. 1 이후 출고 차량**

※ 계약기간 동안 관계 법령에 따른 차령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아. 용역장소 : 용인시청소년수련관 및 용인시 관내 통학버스 운행 노선

자. 운행노선 : 용인 시내 3개 노선(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기관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용역범위

가. 통학버스의 지정노선 운행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나. 통학버스의 차량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등 포함)

다. 통학버스 차량 정기 검사 실시

라. 통학버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유류대, 부품 교체 및 오일 교환 등)

3. 통학버스 운행관리

가. 통학버스 운행시간(대기시간 포함)

1) 학기 중 등원 : 14:30 ~ 16:00

2) 학기 중 하원 : 18:30 ~ 20:00

3) 학교 방학 기간 등원 : 08:50 ~ 10:00

4) 학교 방학 기간 하원 : 13:30 ~ 15:00

5) 주말운행(관내) : **월 2회 이상**, 운행 요청 일(별도 지시에 의한다)에 운행을 하며, 정기 노선 및 외부 활동지를 순환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운행 협의 하에 운행 조정한다.

(운행시간 및 횟수는 방과후아카데미의 요청 시 필히 조정하여야 함)

6) 탑승 대상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재학생으로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통학버스 운행 시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지정하는 노선 및 운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안내광고,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아카데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통학버스 운행 시 이용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 및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휴무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장 등으로 인하여 통학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급 차량을 즉시 대차하여 가·나 항과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이때 방과후아카데미는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통학버스 운전자는 매일 일일차량운행 및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통학버스 운행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선임기사를 배치**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선임기사의 선임은 방과후아카데미의 사전승인(구두 또는 문서 등)을 득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매월 방과후아카데미의 실정에 맞게 차량운행계획(직원교육, 정비 계획 등 포함)을 수립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운전불량(급발진, 급정거, 신호위반, 난폭운전) 또는 운전능력 미흡**으로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투입하여 통학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운전원의 운전 불량으로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자. 용역수행자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방과후아카데미 또는 제 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그 금액을 전적으로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차. 용역수행자의 운전원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통학버스의 운행이 결행된 경우 방과후아카데미는 용역대가 지급 시 결행 횟수를 일할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당일 운행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 된 사고 등에 의한 결행에 대해서는 용역비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결행으로 인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가 배상한다.**

카.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 시 즉각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품위 유지에 힘써야 한다.

파. 운행차량, 운전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하. 재난, 유행성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기 운행 정지 시 운임은, 운행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통학버스의 등하교 운행차량 및 운전원은 동일 해야 한다.

4. 통학버스의 유지관리

가.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개시 1개월 내에 1급 공업사를 통한 차량 정밀 검진을 실시하며, 결과를 방과후아카데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수리를 요할시, 차량 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6개월 이후 같은 방법으로 차량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량입고 점검 시 다른 버스를 준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차량 내부의 쓰레기처리 및 청소를 수시로 하여 차량 내부의 청결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통학버스 부품 교체 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개시일 14일 전까지 실제 운행에 투입할 차량 3대를 확정하고,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가 용역개시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용역개시일 전까지 차량 전면, 좌우 측면 및 후면에 “용인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문구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문구 디자인은 방과후아카데미의 지시에 따른다.)

사. 용역수행자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철저히 맞추어 운행하여야한다.

5. 운전원 관리

가. 운전원의 자격요건

1)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 30세 이상인 자로 자동차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3)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중인자, 병역기피 자, **성범죄 및 아동폭력 전과** 등)가 없는 자.

4)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나. 운전원의 교육 필수 이수 - 통학버스 안전 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 3)

다. 운전원은 통학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하고 운행 중 통학버스 이용회원의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방과후아카데미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용역수행자가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과후아카데미와 사전에 협의 후 교체 하여야 한다 - 공문제출(운전원 신상 포함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용)

라. 운전원은 통학버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근무하여야 하며, 방과후아카데미의 업무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운전원은 근무 중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 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통신시설, 소모품 및 피복 등을 운전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단, 그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며, 만일 운전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물품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선지급하고 용역비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사. 용역수행자는 통학버스 운행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사항을 방과후아카데미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담당을 지정하여 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원의 변동은 사전에 방과후아카데미에 협의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출발, 급정거를 하는 행위

2)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3)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4) 통학버스 담당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5)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가) 청소년들에게 욕설 및 위협적 발언을 하는 행위

나) 청소년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다) 차량 내 흡연행위

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마) 욕설 및 운행 중 타 운전자와의 다툼 등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6)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8)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9) 차량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11) 소란행위, 풍기문란행위, 음주행위

12) 다른일정 또는 운전원 개인의 일로 방과후아카데미의 일정을 임의로 조정 요구하거나 등하원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다른 일정 등의 이유로 방과후 일정을 급하게 진행하여 과속, 부족한 시간 안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13) 기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금지하는 행위

차.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카. 용역수행자는 운전기사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대금청구 시 운전원의 전월 임금 입금 내역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대금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타. 운전원은 이용고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통학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방과후아카데미의 요청이 있을시, 횡단보도 안내 등 교통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파. 용역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용역자로서 친절의 의무를 성실히 한다.

6. 통학버스 및 통학버스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011.5.11.)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	**정의** <제2조 제32호>	- 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시설 -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차	'08.01.14.~	-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2	**색상** <제19조 제8항>	- 황색(스포일러 포함 (천정에어컨, 몰딩 제외)	1997.08.25.~	
3	**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제9항>	- 앞 : 우측 상단(150㎜*400㎜) / 뒤 : 중앙 하단(200㎜*500㎜) - 1㎜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1997.08.25.~	
4	**정지 표시장치** <제19조 제10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튜닝 :2014.2.21.~ 제작 :2015.1.1.~	
5	**좌석** <제25조 제2항>	- 가로·세로 각각 27㎝ 이상 -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간 거리 46㎝ 이상	2019.12.31.까지	
		- 좌석규격 : 가로 30㎝, 세로41.4㎝ 이상 - 등받이 : 71㎝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 좌석간 거리 : 5%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2020.1.1.~	
6	**접이식 좌석** <제25조의2>	- 외부에서 접이식좌석을 조작 할 수 있어야 함	1999.02.19.~	
7	**좌석안전띠** <제27조 제6항>	-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되어야 함	1997.08.25.~	
8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27조의2>	- 승용자동차에 설치, 2곳 이상 좌석에 설치(2열에 최소 1곳) - 도구 없이 사용가능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2010.1.15.~	ISO FIX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9	**승강구** <제29조 제1항 제4호>	- 1단 : 높이 30㎝ 이하, 가로-승강구 유효너비 80% 이상, 세로-20㎝ 이상 - 2단 : 높이 20㎝ 이하(15인승 이하는 25㎝ 이하)	가로·세로 너비 기준은 2011.08.31. 이전·이후 상이	
10	**표시등** <제48조 제4항>	- 안쪽 황색 (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 바깥쪽 적색 (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 황색, 적색 동시점멸 금지	2009.06.09.~ (개정-제5호 각목)	
11	**간접시계장치** <제50조 제2~3항>	-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2017.01.09.~	
1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 후방영상장치 : 관측영역 조건 존재(규칙 참고) -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보행자용) -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2019.07.01.~	
13	**하차확인장치** <제53조의4>	-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표시등(비상등) 작동 -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 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A) 이상	'19.4.17. 시행 (기존차량도 의무설치)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4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 제2항>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인 경우,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	'19.11.15.~	전문 진단장비로 OBD 단자에 연결하여 확인
15	**운행기록장치** <제56조> 교통안전법 제55조	-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21.1.1.~ (시행일 이전 신고·운영 중인 차량은 23.1.1.부터)	
16	**창유리 썬팅** <제94조 제3항>	-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21.4.17. 시행 (기존차량도 적용)	

7. 업무보고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용역세부계획서와 용역비 산출내역서(용역수행자 자체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매월 대금 청구 시 용역수행보고서(자체양식 사용가능) 및 대금산출내역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방과후아카데미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및 관련법규 준수 등의 책임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시정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약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위반사실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부과·공제할 수 있다.

구 분	적 용 범 위	공 제 율	비 고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미운행	30분 이상 - 1시간미만	2/1000	
	미운행	5/1000	
과속(20킬로미터초과)	법규위반, 관리자 지적 시	위반 횟수마다 0.5/1000	
법규위반추월	법규위반, 관리자 지적 시	〃	
졸음운전	관리자가 발견 지적 시	〃	
음주운전	관리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 사실 시인	운전자 1명당 4/1000	음주운전 의심 시 즉시 운행 중지 및 대체운전원 투입, 음주운전 사실 확인 시 해당 운전자 향후 운행 금지
차량 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차량 및 인명사고발생 (미운행 포함)	발생 횟수 당 5/1000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위약금의 산정 기준금액은 월 용역대금으로 하며, 위반사항은 담당자의 현장 확인, 운행기록장치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용한다.

9. 계약해지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과업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방과후아카데미에 피해를 입혔을 때

나. 사전 통보 없이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았을 때

다. 지시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문서로 최고한 후 3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았을 때

라. 도급자의 파산 또는 운행대금 가압류 등 정상적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마. 기타 업무방해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때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 또는 유무선전화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 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해 방과후아카데미에 발생한 손해 및 운행차질로 발생하는 대차 등 비용 일체는 용역수행 비용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용역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요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2) 노사분규로 인하여 통학버스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본 과업지시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4) 용역수행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도급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통학버스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기사항 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방과후아카데미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입찰에 의거 선정된 계약업체는 용역 수행 개시 전 신품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하며, 그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기타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양자의 합의하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차량운행 중 사고발생시 사고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지도록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 ·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아. 용역수행자는 운행노선의 회원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용역수행자는 지정된 승차장소를 무단통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방과후아카데미의 요구에 의해 노선 변경 사항이 발생될 시, 용역수행자는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제시한 노선에 의해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차량간 이동시 재배치 10일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는 용역의 중도포기 시 방과후아카데미에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 부터 2개월이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반드시 운행하여야 한다.

붙임1) 통학버스 운영노선표(2026년 현재 기준) 예시

붙임2) 용역수행보고서 양식(예시)

붙임 1)

통학버스 운영노선표(예시)

1호차			
등원	승차 위치	하원	하차 위치
14:30	청소년수련관 대기	18:40	청소년수련관 대기
14:40	청소년수련관 출발	19:00	청소년수련관 출발
14:45	풍림아파트 버스정류장	19:05	삼가동 우남아파트 버스정류장
14:50	초당초 버스정류장	19:10	풍림아파트 버스정류장
14:57	동백중학교 버스정류장	19:17	초당초 버스정류장
15:00	동막초등학교 버스정류장	19:27	동백중학교 버스정류장
15:10	하나로마트(용인점) 버스정류장	19:30	동막초등학교 버스정류장
15:12	대우, 진흥아파트 버스정류장	19:40	하나로마트(용인점) 버스정류장
15:15	쌍용아파트 버스정류장	19:42	대우, 진흥아파트 버스정류장
15:25	삼가동 진우아파트 버스정류장	19:45	쌍용아파트 버스정류장
15:30	청소년수련관 도착	20:00	청소년수련관 도착

2호차			
등원	승차 위치	하원	하차 위치
14:30	청소년수련관 대기	18:40	청소년수련관 대기
14:40	청소년수련관 출발	19:00	청소년수련관 출발
14:55	포곡초등학교 후문	19:10	우남 아파트
15:03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건너편	19:13	서희 아파트
15:10	둔전 다이소 버스 정류장	19:28	포곡초등학교 후문
15:15	유림동 농협	19:32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건너편 (버스정류장)
15:25	서희 아파트	19:40	둔전역(인정멜로디) 버스정류장
15:27	우남 아파트	19:45	유림동 농협
15:30	명지대역(구 세브란스 버스정류장)	19:55	청소년수련관 도착
15:35	청소년수련관 도착		

3호차			
등원	승차 위치	하원	하차 위치
14:30	청소년수련관 대기	18:40	청소년수련관 대기
14:40	청소년수련관 출발	19:00	청소년수련관 출발
15:00	정동마트(고림점) 버스정류장	19:05	동원로얄듀크 버스정류장
15:07	고림고 버스정류장	19:10	명지대역 버스정류장
15:10	양우내안 3차 버스정류장	19:15	용인초 건너편
15:15	용인초 정문	19:20	덕영고 앞 삼거리
15:20	명지대역 건너편	19:25	고림고 건너편 버스정류장
15:25	명지대입구 사거리 시외버스정류장	19:30	정동마트(고림점) 버스정류장
15:30	청소년수련관 도착	19:50	청소년수련관 도착

- 2027년 참여 청소년 모집 현황에 따라 운행노선 및 시간 변경 -

※ 상기 차량 노선은 2026년 학기중 운행노선이며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는 등하교 시간이 오전으로 변경 됨, 변경 일정은 청소년들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추후 공지함

붙임 2)

용역수행보고서 차(예시)

1. 용 역 명	2027년도 용인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통학버스 임차용역		
2. 계 약 번 호			
3. 계 약 금 액	금		원정 (₩)
4. 기청구 금 액	금		원정 (₩)
5. 청 구 금 액	금		원정(₩)
6. 계 약 잔 액	금		원정(₩)
7. 계 약 일 자	2026년 월 일		
8. 착 수 일 자	2027년 01월 01일		
9. 완 수 기 한	2027년 12월 31일		
10. 용 역 차 수	차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상 호

2027. . .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귀 하